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8호 2024. 5. 20(월)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2032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
- 남원시 조례 제2033호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11
- 남원시 조례 제2034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14
- 남원시 조례 제2035호 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1
- 남원시 조례 제2036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5
- 남원시 조례 제2037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29
- 남원시 조례 제2038호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시후관리 조례-----31
- 남원시 조례 제2039호 남원시 현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6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743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38
- 남원시 규칙 제744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41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2 호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을 “다른 법령이나”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도비보조”를 “전북특별자치도비 보조”로, “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가”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하여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을 “제1항에”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두며”를 “두고”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 안건, 회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을 “분야별”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2. 제8조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4.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 다른 법령이나 ----- ----- -----.</p>
<p>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4조(보조대상 사업) ----- ----- ----- ----- ----- -----.</p>
<p>1.·2. (생략) 3. <u>도비보조</u> 재원에 따른 것으로 <u>도지사</u>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u>시가</u>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1.·2. (현행과 같음) 3. <u>전북특별자치도비 보조</u>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4. ----- ----- -----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u> - -----</p>
<p>&lt;신 설&gt;</p>	<p>제5조의2(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p>

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 사업에 관하여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방  
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  
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  
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  
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  
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생략)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장은 제1항 따라 지방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보조금 전용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략)
-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5. ~ 8. (생략)

제11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② ----- 제1항에 -----  
-----  
-----  
-----.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두고 -----  
-----.

제1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 제36조의3-----  
-----
- 5. ~ 8.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 안건, 회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7조 (생략)

제12조(분과위원회) ① -----  
-----  
--- 분야별-----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2. 제8조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사항
- 4. 성과평가 결과
- 5. 그 밖에 시장이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3 호

###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국제대회·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외 대회를 시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

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
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국제대회·전국(도)대회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대회·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국제대회·전국(도)대회 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스포츠마케팅

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대회·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대회·전국(도)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포츠마케팅 추진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4 호

###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을 ““문해교육”이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중 “장”을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제29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문해교육)”을 “(문해교육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자해득능력”을 “문해능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u>법 제2조제3호</u>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3. “<u>문자해득교육</u>”(이하 “<u>문해교육</u>”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p> <p>4. ~ 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법 제2조제2호</u>----- -----.</p> <p>3. “<u>문해교육</u>”이란 ----- -----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7조(구성 등) ① (생략)</p> <p>② 협의회 의장은 <u>부시장</u>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가.·나. (생략)</p>	<p>제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장</u>----- -----.</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나. (현행과 같음)</p>

다.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  
· 시설의 장

라.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7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  
학습관은 협의회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  
원

8.·9. (생략)

제29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  
생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  
하기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  
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  
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

다. -----  
----- 운영자

라. (현행과 같음)

④ -----  
----- 1회 -----  
-----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평생학습관의 기능) ----  
-----  
-----.

1. ~ 6. (현행과 같음)

7.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8.·9. (현행과 같음)

제29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 설치·운영) ① -----  
-----  
-----  
-----  
-----  
----- 운영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  
----- 문해능력 -----

# 시 보

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1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시  
장은 평생학습 수요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를 육성할 수 있다

제32조 · 제33조 (생략)

제34조 · 제35조 (생략)

-----

-----.

<삭제>

제31조 · 제32조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와 같음)

제33조 · 제34조 (현행 제34조 및  
제35조와 같음)

## 【별표 1】

##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 1. 수강료 기준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2시간 이하	1,000원	회당	○ 수강신청 시 프로그램별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선납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1,500원		

- ※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는 학습자 자부담

## 2. 수강료 면제 기준 (1인 1과목에 한함)

구 분	감면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9. 한부모 가정(차상위 계층)	(1인 1과목) 100% 면제

## 【별표 3】

##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대관시설	수용인원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당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1.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2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2. 컴퓨터실, 조리실은 10명 이상 관련 수업 시에만 대여 가능  3. 부대시설 이용료는 기본사용료에 포함.  ※ 대관시설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시설 대여를 하지 않음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세미나실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다목적강연장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조리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컴퓨터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댄스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재봉실	15명	1회 3시간	20,000원	
강의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 2. 사용료 면제 기준

구 분	감면 금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위원회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5 호

### 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 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7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건축”으로, “60퍼센트 이하”를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 략)</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u>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u>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u>60퍼센트 이하</u>로 한다.</p> <p>1. ~ 3. (생 략)</p> <p>⑦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⑧ · ⑨ (생 략)</p>	<p>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건축</u> ----- ----- ----- <u>생</u> <u>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u> <u>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⑦ 영 제84조제9항----- ----- ----- -----.</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6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u>30만원</u>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 ----- ----- <u>45만원</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u>그</u>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④ (생략)</p>	<p>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그</u>----- <u>렇지 않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7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건축”으로, “60퍼센트 이하”를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략)</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u>생산녹지지역</u>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u>60퍼센트</u> 이하로 한다.</p> <p>1. ~ 3. (생략)</p> <p>⑦ <u>영 제84조제8항</u>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⑧·⑨ (생략)</p>	<p>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건축</u> ----- ----- ----- <u>생</u> <u>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u> <u>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⑦ <u>영 제84조제9항</u>----- ----- ----- -----.</p> <p>⑧·⑨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8 호

###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분석 및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민간 참여 확대 방안
7.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 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제10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완된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2039 호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6”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u>」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헌혈 권장활동”이란 「<u>혈액관리법</u>」 제4조제1항과 「<u>혈액관리법 시행령</u>」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1조(목적) ----- 「<u>혈액관리법</u>」 제4조의6----- ----- ----- ----- -----.</p> <p>제2조(정의) ----- -----.</p> <p>1. ----- 「<u>혈액관리법</u>」 제4조의3 및 「<u>혈액관리법 시행령</u>」 제2조의3제2항----- ----- ----- -----.</p> <p>2. 3.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규칙 제 743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  
 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방세통합정보통신망 -----  
 -----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5월 16일

남원시 규칙 제 744 호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4조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생략)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연도  
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  
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  
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  
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  
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  
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  
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  
-----  
----- 「지방세기본법」 제55  
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  
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  
연가산세를 ---.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  
-----  
-----  
----- 지  
방세통합정보통신망 -----  
-----  
-----.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지방세 (가산세 포함)	
	목	결정액		가산금      계	
결정세액		금 원(W 원)			
납세인원		시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관련)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 [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4조, 제5조, 제7조 관련)

##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세표준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5조 관련)

## 징 수 부

회계 연도 :           년도  
 결의 연월일 :       년도       월분  
 제 목 :  
 징 수 세 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 포함)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00세																
00세																

297mm×210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8조 관련)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비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가산횟수	물건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계	

364mm×257mm(백상지 80g/m<sup>2</sup>)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8조 관련)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 읍·면·동)

과세 번호	세목	지방세	지난년도 가산세 총계	가산세												가산세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m<sup>2</sup>)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9조 관련)

(앞 쪽)

<b>지방세 체납액정리표</b>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여)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영업소)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p style="text-align: center;"><b>주거 확인</b></p> <p>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b>재산 확인</b></p> <p>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b>생활상태 확인</b></p> <p>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그 밖의 사항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b>제조사 확인</b></p> <p>위 사실을 제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제13조 관련)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정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채납자	주소				상    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여)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납세자 주소(영업소)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그 밖의 사항									
납세자 주소(영업소)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 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단서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 채납 지방세를 정정보류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뒤 쪽)

##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 주소(영업소)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 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 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제13조 관련)

정 리 보 류 표							
결 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제13조 관련)

시효완성정리표							
결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16조 관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 여부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체납 요지

심의청구 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